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879호, 제880호, 제881호
- 다. 제출일자 : 2023. 5. 30.
- 라. 회부일자 : 2023. 6. 1.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 산 개 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2	155,722	155,722	203,681	183,404	988	19,289	90.0%

- 세입예산현액은 1,557억 22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036억 8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0.0%인 1,834억 4백만원을 수납하고 9억 88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192억 89백만원은 미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662,673	3,470	40,553	-	13	90,996	731,178	726,193	1,765	694	1,071	15	3,206 (0.4%)

- 예산액 6,626억 7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70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405억 53백만원, 이체 순증액 244억 8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311억 78백만원으로, 이중 99.3%인 7,261억 93백만원을 지출하고 0.2%인 17억 6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32억 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3건에 13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심리회복 지원’과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간,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사업에서 발생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3건에 405억 53백만원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362억 39백만원, ‘금호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증액 소송 판결금 지급’ 35억 79백만원, ‘미지급 용지 보상’ 7억 35백만원임.

○ 이 체

- 예산 이체는 33건에 244억 82백만원 순증으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5건 6억 43백만원, 도시교통실에서 11건 396억 98백만원 이체받았으며, 기획조정실로 1건 158억 59백만원 이체하였음. 16건 506억 55백만원은 안전총괄실 내부 이체건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6억 94백만원, 사고이월은 7건에 10억 71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7,311억 78백만원 대비 0.2%인 17억 65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2억 6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7,311억 78백만원 대비 0.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2	731,178	3,206	0.4%	
2021	471,469	3,605	0.8%	
2020	450,313	6,891	1.5%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정산잔액 : 15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억 86백만원
- 낙찰차액 : 7억 28백만원
- 지출잔액 : 16억 77백만원

나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39,641	4,055	-	-	124 (-124)	-	43,696	24,233	19,069	4,503	14,566	-	393 (0.9%)

- 예산액 396억 4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5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6억 96백만원으로 이 중 55.5%인 242억 33백만원을 지출하고 43.6%인 190억 6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3억 9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2)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 변경은 1건에 1억 24백만원으로,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제정)’ 사업에서 발생함.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4건에 45억 3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145억 66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436억 96백만원 대비 43.6%인 190억 69백만원임.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억 9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436억 96백만원 대비 0.9%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2	43,696	393	0.9%	
2021	25,112	394	1.6%	
2020	24,671	548	2.2%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3억 93백만원

다 . 광역 교통 시설 특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2	3,825	3,825	3,825	3,825	-	-	100%

- 세입예산현액은 38억 25백만원이고, 38억 2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0%인 38억 25백만원을 수납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2	3,825	17,184	-	-	-	-	21,009	16,686	4,322	-	4,322	-	(0.0%)

- 예산액 38억 2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8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0억 9백만원으로 이중 79.4%인 166억 86백만원을 지출하고 20.6%인 43억 2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3건에 43억 22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210억 9백만원 대비 20.6%인 43억 22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없음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22	21,009	-	0.0%	
2021	45,244	25	0.1%	
2020	113,117	715	0.6%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2	98,396	98,396	78,296	78,296	-	-	100%

- 세입예산현액은 983억 96백만원이고, 782억 96백만원이 정수 결정되어 이 중 100%인 782억 96백만원을 수납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753,144	80,354	3,470	194 (-194)	956 (-956)	74,796 (-13,709)	898,055	729,961	120,886	23,711	97,175	-	45,835 (5.1%)

- 예산액 7,531억 4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3억 54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34억 70백만원, 이체 순증액 610억 8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80억 55백만원으로 이중 81.3%인 7,299억 61백만원을 지출하고 13.5%인 1,208억 8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458억 3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1억 94백만원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사업에서 발생함.

○ 변 경

- 예산 변경은 8건에 9억 56백만원으로
-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2억 6백만원
-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1억 98백만원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1억 39백만원 등임.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3건에 34억 70백만원으로,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8억원,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12억 11백만원,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4억 59백만원임.

○ 이 체

- 예산 이체는 11건에 610억 88백만원 순증으로, 도시교통실에서 8건 610억 88백만원 이체받았으며, 3건 137억 9백만원은 안전총괄실 내부 이체건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0건에 237억 1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1건에 971억 75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8,980억 55백만원 대비 13.5%인 1,208억 86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58억 3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8,980억 55백만원 대비 5.1%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2	898,055	45,835	5.1%	
2021	1,021,877	28,398	2.8%	
2020	956,430	81,860	8.6%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 11억 38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22억 4백만원
- 낙찰차액 : 126억 38백만원
- 지출잔액 : 98억 55백만원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2	1,475,780	4,718	473,024	39,000	200,000	16,832	719,036	23,170	1,475,780	759,816	686,071	20	29,872
2021	1,175,145	10,004	263,853	113,675	600,000	4,565	172,233	10,815	1,175,145	451,382	719,036	9	4,718
2020	1,225,041	1,521	569,807	3,918	150,000	6,351	491,954	1,490	1,225,041	1,042,797	172,233	7	10,004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730억 24백만원, 보조금 390억원, 차입금 2,000억원, 이자수입 168억 32백만원, 예치금회수 7,190억 36백만원, 전년도이월액 47억 18백만원, 기타 231억 70백만원을 합한 1조 4,757억 80백만원이며,
- 사업비 7,598억 1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 7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0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860억 71백만원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바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차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2	59,703	1,081	-	620	16,893	-	41,109	59,703	32,110	26,211	-	1,382
2021	53,193	598	-	423	19,738	-	33,032	53,193	35,219	16,893	-	1,081
2020	51,191	-	-	339	18,072	-	32,780	51,191	31,453	19,140	-	598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81백만원, 이자수입 6억 20백만원, 예치금회수 168억 93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11억 9백만원을 합한 597억 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53.8%인 321억 10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62억 11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3억 82백만원은 연구용역비, 감리비, 전산개발비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함.

4. 검 토 의 건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2	155,722	155,722	203,681	183,404	988	19,289	90.0%
2021	68,967	68,967	84,343	68,109	45	16,189	80.8%
2020	88,888	88,888	84,969	70,482	77	14,410	83.0%

가) 개 요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57억 22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036억 8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0%인 1,834억 4백만 원을 수납되고 9억 88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192억 8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2,036억 81백만원)의 경우 예산액(1,557억 22백만원) 대비 130.8%로 총 479억 5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차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4,159	27,309	27,176	△6,850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부료 감면) 및 재산평가액 하락으로 대부료 감소
212-01 도로사용료	72,883	75,637	73,512	2,754	○ 최근 3년 평균징수율 98.11%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상치를 상회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수입	17,173	50,023	49,519	32,85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편입 사유지 보상금 및 용두시장 매각 수입금 등으로 세입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미편성함에 따라 차이 발생
225-01 지난연도수입	3,951	20,178	4,119	16,227	○ 지난연도 맨홀정비비 청구수입과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체납액 등으로, 납부자 납세태만과 평균 징수율을 고려한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징수결정액간 차이 발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1-01 과징금	171	1,612	1,298	1,441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과징금 선택 증가에 따른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 전년도('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153억 76백 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2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는 479억 59백 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68억 5천 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용료' 27억 54백 만원, '그외수입' 328억 5천 만원, '지난연도수입' 86억 12백 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임.

○ 개별적인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의한 수입으로 세입예산액 341억 59백만원 대비 79.9%인 273억 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5천만원이 감소했는데,

-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¹⁾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감면 및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액 하락으로 인한 대부료 감소에 기인한 것임.

○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수납받는 ‘도로사용료’는 최근 3년치 평균 징수율(98.11%)을 고려해 편성했던 예산액 대비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7억 54백만원 증가하였음.

○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그외수입’은 예산액 171억 7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00억 23백만원으로 328억 5천만원이 증가했는데,

- 이는 GTX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용산구 동자동 38-2 외 93건)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303억 42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외 공유토지(13억 56백만원) 분할 청산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세부내역별 예산액-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차액 (B-A)	사유
합계		17,173,466	50,023,053	32,849,587	
1	안전지원과	-	147	147	○ 2021년 12월 초과수당 과지급 반납액으로 예측곤란하여 예산액 미편성
2	건설혁신과	-	20	20	○ 출장여비 초과지급분 반납으로 예측곤란하여 예산 미편성
3	도로계획과	-	31,871,607	31,871,607	○ 수납된 금액은 GTX사업에 편입되어 발생하는 사용료 및 용두시장 매각 수입금 등으로 세입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4	도로관리과	5,451,200	1,045,356	△4,405,844	○ 맨홀정비 : 도로관리과에서 6개 사업소 부과징수액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나, 실제 징수 및 수납은 사업소에서 시행 ○ 공동조사 : 공동조사 용역의 예산을 기준으로 공동조사 분담비용 예산액 산정하였으나, 용역의 예산과 준공금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분담비용이 감액됨
5	도로시설과	11,722,266	13,478,303	1,756,037	○ 대행사업비 정산금 세입은 '18년~'20년 평균으로 추계하였는데 실제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차이 발생 ※ 예산 4,816백만원 / 징수결정 6,603백만원 ○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리비 감면)으로 수입 감소 ※ 예산 6,906백만원 / 징수결정 3,311백만원 / 차이 - 3,595백만원 ○ 기타(점등시간 연장, 이설비 반납, 태양광발전소 사용료 등) 3,564백만원 수입이 증가하였음
6	교량안전과	-	16,400	16,400	교각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징수로 예측곤란하여 예산 미편성
7	도로사업소 (6개)	-	3,611,221	3,611,221	○ 당해연도 불량맨홀 정비비 등으로 도로사업소는 별도 예산 미편성

다) 미수납액

-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192억 89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1억 33백 만원
- 도로사용료	21억 25백 만원
- 기타사용료	17백 만원
- 기타사업수입	35백 만원
- 기타이자수입	32백 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57백 만원
- 그외수입	5억 4백 만원
- 지난연도수입	150억 71백 만원
- 과징금	3억 14백 만원
- 변상금	7억 65백 만원
- 기타과태료	1억 35백 만원

-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수납받는 것인데 금회 미수납액 21억 25백만원은 납세자 납부태만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징수활동의 강도에 따라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므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참조)에서는 ‘납세태만’이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192억 89백만원 중 61.7%인 119억 6백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급여압류,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특단의 징수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19,288,981	100%
	무재산	3,235,224	16.8%
	행방불명	319,320	1.7%
	납세태만	11,906,090	61.7%
	폐업 또는 부도	812,391	4.2%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50,575	0.8%
	소송계류	47,030	0.2%
	국외이주	100,206	0.5%
	자금압박	159,034	0.8%
	기타	2,154,008	11.2%
	납기미도래	405,104	2.1%

라) 결손처분

-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결손처분 총액은 9억 88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난연도수입

9억 88백만원

- 일반회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효소멸이 전체 결손처분 총액 중 97.0%를 차지하고 있는데,
- 시효소멸은 「지방세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 행사 개시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는 5년경과 후에 발생하므로 시효소멸에 임박한 전에 대해서는 예방적 특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표] 일반회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988,314	100%
	시효소멸	958,401	97.0%
	무재산	24,473	2.5%
	기타	5,440	0.6%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662,673	3,470	40,553	- (-)	13 (-13)	90,996 (+66,514)	731,178	726,193	1,765	694	1,071	15	3,206 (0.4%)
2021	465,824	3,267	2,378	144 (-144)	19 (-19)	-	471,469	464,694	3,167	1,625	1,542	3	3,605 (0.8%)
2020	441,110	4,946	4,257	85 (-85)	55 (-55)	31,844 (-31,844)	450,313	440,155	3,267	1,640	1,627	-	6,891 (1.5%)

가) 개 요

- 예산액 6,626억 7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7천만원, 예비비 사용액 405억 5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311억 78백만원으로, 이 중 99.3%인 7,261억 93백만원을 지출하고 0.2%인 17억 6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32억 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지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등 11건([표] 참조)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안전총괄과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17	6	11	62.7%
2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688	452	235	34.2%
3	중대재해 예방과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94	61	34	35.7%
4	건설혁신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5	3	2	45.1%
5	도로계획과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3	0	3	86.1%
6	도로계획과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770	-	770	100.0%
7	도로관리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50	18	32	63.1%
8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22	14	8	34.8%
9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2,795	2,070	458	16.4%
10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546	2,079	467	18.3%
11	도로시설과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20	13	7	33.9%

○ 먼저,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22)에 따라 시·구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2)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천 7백만원 중 62.7%인 1천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관리평가를 간소화하여 현장평가를 미 실시하고 시·구공동협력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 참고로, 그 전년도에는 2021.2월에 하달된 행정안전부 지침(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558호, '21.2.8.)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재난관리평가 전면적으로 미 실시하여 전액 불용한 바 있음.

○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업은 시기별(해빙기, 동절기, 추석·설날 등)로 재난에 취약한 도시 위험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9천 4백만원 중 35.7%인 3천 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22년 상반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정부의 비대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점검을 축소하여 당초 계상했던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일부 미집행(2천만원)되었고, 온라인 배포를 통한 안내리플릿, 매뉴얼 책자 등 제작비용 절감(1천 3백만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비대면 정책 시행으로 점점이 축소되었던 것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향후 동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재난에 취약한 도시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은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³⁾에 따라 하도급 부조리 관행 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80만원 중 45.1%인 216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예산은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비용(340만원)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비용(14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2회) 후 잔액 76만원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은 지급실적이 없어 140만원 전액을 불용한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전년도 결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사유로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바 있으며 금회에도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불공정하도급거래 문제는 건설업계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품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원도급인, 발주자,

3)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므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은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일대 캐노피를 교체(비닐천막→유리재질)하려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7억 7천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 캐노피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사업시행자와 협약변경이 필요하나 사업시행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후순위 대주단의 협약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22년은 대주단(원고)과 시·영등포구(피고) 간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이었으므로 대주단의 동의를 받지 못 해 전년도로부터 이월받았던 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된 것임.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진행경과>

- 선순위대주단이 '19.10월, 후순위대주단이 '20.6월 市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각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판결결과, 市 승소
- '19.10.14. : ‘해지시지급금 청구의 소’ 제기 (선순위대주단 → 市)
- '20.06.17. : ‘해지시지급금 청구의 소’ 제기 (후순위대주단 → 市)
- '21.06.14. : 1심 판결선고 (市 승소, 선/후순위대주단)
- '22.12.07, 21. : 2심 판결선고 (市 승소, 선/후순위대주단)
- '23.04.13. : 3심 판결선고 (市 승소, 선/후순위대주단)

- 다만, 동 사업 예산을 최초 편성한 2021회계연도 이전인 '19년 10월 선순위대주단, '20년 6월 후순위대주단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 '21년 6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같은 해 7월 대주단으로부터 항소가 제기되는 등의 상황에서 동 사업의 정상적 추진의 어려움이 예견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음.
- '도로부지 실태조사'는 市 도로부지의 무단점유 및 민원유발 등으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필지에 대한 측량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천만원 중 63.1%인 3천 2백 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위임관리기관인 각 자치구에서 측량 필요시 요청하는 예산으로 그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최근 3년간('19년~'21년) 평균 조사 건수 및 집행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로부지 실태조사 건수가 3건이 발생함에 기인한 것임.
 - 참고로, 최근 5년간 도로부지 실태조사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5건에 약 4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음.

[표] 최근 5년간 도로부지 실태조사 지원내역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건수(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8년	6	70,000	66,704	95.3
2019년	8	70,000	48,772	69.7
2020년	4	58,000	33,507	57.8
2021년	4	53,000	47,688	90.0
2022년	3	50,000	18,465	36.9

-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은 도로사업소 청사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으로 사무능률 및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27억 95백만원 중 16.4%인 4억 58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중 2억 84백만원은 시설비이며 8천만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임.

[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통 계 목	예산현액 ①	집행액 ②	집행률 ②/①	차년도이월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계	2,794,511	2,070,072	74.1	266,699	457,740	1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7,928	237,144	74.6		80,784	25.4
공 공 운 영 비	178,255	158,235	88.8		20,020	1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000	35,976	97.2		1,024	2.8
특 정 업 무 경 비	327,075	285,089	87.2		41,986	12.8
시 설 비	1,732,761	1,181,935	68.2	266,699 (15.4%)	284,127	16.4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492	171,693	85.2		29,799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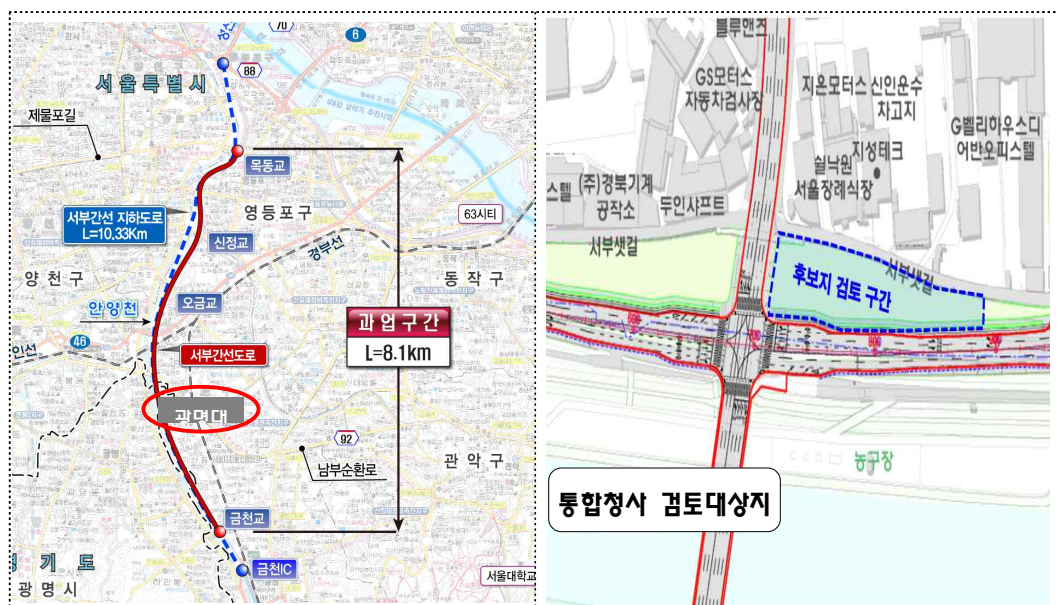
- 시설비 예산현액은 17억 33백만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2억 72백만원(15.7%)을 불용하고 15.4%

인 2억 67백만원은 차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임.

- 남부도로사업소는 신축이전이 결정되어 신청사(사무동)는 금천구 시흥동에, 현장기지(현장근무자 사무동, 장비, 자재적재 등)는 서초구 우면동 강남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조성하였으나 현장기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현장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21. 11월)에 따라
- 서울시는 대안 마련을 위해 '시·사업소·노조 합동 TF'를 구성('22. 2월)하여 운영해왔으며 최종적으로 통합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공공부지를 확보('22. 12월)한 상태임.

< 남부도로사업소 통합청사 검토지 현황 >

- 위치/면적 : 금천구 가산동(4,732㎡)
- 서부간선 상부 일반차로화에 따라 신규 발생
- 공공부지로 토지보상비 절감, 사업소 청사로 적정
- '23.5월 평면화 공사 착공 → '24.下 부지조성 완료
-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 등('23년) → 설계·시공('24~25년)



- 이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23년에 이행할 예정이며, 설계·시공 일괄시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5년 말까지 사업소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임.
- 이 과정에서 2021년회계연도 예산에 구청사 철거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2022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이 중 48.5%인 2억 7천만원을 재차 2023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고 2억 8천만원을 불용하게 된 것임.
- 또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대안이었던 광명시 철도용 지로의 이전이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월된 예산과는 별도로 본예산에 구청사 철거비 5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사업소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청사 철거비를 편성하고 이를 불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기 준공된 금천청사는 금천구에서 공공청사나 주민시설 등으로 매입 또는 임차할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 체

○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33건에 244억 82백만원 순증으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5건 6억 43백만원, 도시교통실에서 11건 396억 98백만원 이체받았으며, 기획조정실로 1건 158억 59백만원 이체하였고 나머지 16건 506억 55백만원은 안전총괄실 내부 이체전임.

- 이는 2022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교통실 보도유지관리 관련 조직 및 업무를 안전총괄실 내 ‘도로관리과’로 이관,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서울기술연구원 주무부서 변경(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안전총괄실 내 지하도상가 관리업무 담당부서 변경(건설혁신과→도로시설과) 등에 따른 것임.

[표]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06-01 출연금	15,859	15,859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06-01 출연금	-	-	15,859
2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	-	36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365	365	-
3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207-02 전산개발비	-	-	4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207-02 전산개발비	412	412	-
4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	5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50	50	-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5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	332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332	332	-
6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	53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53	53	-
7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	-	250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250	250	-
8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9	-	8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97	8	-
9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7	-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43	3	-
10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5	-	-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5	-	-
11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6	-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7	1	-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	5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50	50	-
1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	-	2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22	22	-
1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14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4	14	-
1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	4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	4	-
1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	-	945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945	945	-
17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	-	3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3	3	-
1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303-01 포상금	-	-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303-01 포상금	-	-	-
1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	-	11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110	110	-
2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	-	38,006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38,006	38,006	-
2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	8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82	82	-
2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	-	46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국고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460	460	-
2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가로등 관제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	7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가로등 관제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0	70	-
24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	401-01 시설비	-	-	18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	401-01 시설비	188	188	-
25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5	-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3	-	-
26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5	-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1	5	-
27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4	-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5	-	-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28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4	-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6	-	-
29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3-03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	-	1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3-03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10	10	-
30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	48,67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8,679	48,679	-
3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지하도상가 개보수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	50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개보수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500	500	-
3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01-01 사무관리비	-	-	35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01-01 사무관리비	352	352	-
3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	-	2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20	20	-

마) 변경사용

-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3건에 1천 3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심리회복 지원’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사업에서 발생함.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는 대민활동비 지급예산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1백만원을 변경사용했으며,
- 국비지원 사업(국비 4,150만원, 시 4,150만원)인 ‘재난심리회복지원’에서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 2백만원으로 변경사용했는데
 - 이는 ‘22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행정안전부 통보에 근거해 한 개의 사업(‘재난심리회복지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두 개의 사업(‘재난심리회복지원’과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리 편성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른 것임.
- 마지막으로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에서는 철거대상 사유재산(종로구 효제동 305-2번지 건물)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정산을 위한 지출을 목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201-01 사무관리비	153	1	-	'22.11.29.	대민활동비 지급예산 부족에 따른 변경사용
				204-03 특정업무경비	158	-	1		
2	안전 지원과	재난상황관리	재난심리회복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83	12	-	'22.3.16.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관련 변경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	-	12		
3	도로 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도로부지(행정 재산)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3	0.3	-	'22.6.29.	철거 건물 공공운영비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 변경
				201-02 공공운영비	-	-	0.3		

바) 예비비

- 예비비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금호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증액 소송 판결금 지급’ 등 총 3건에 405억 53백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36,239	'22.10.21.	양재 하림부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증액 소송 판결금 지급	3,579	'22.11.29.	금호로 확장사업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
도로계획과	미지급 용지 보상	735	'22.12.28.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합계	3건	40,553		

- 먼저, ‘부당이득금반환소송’건은 ‘09년 유통업무설비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서울시가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확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13년 공사를 완료하여 ‘23년 현재 공용 중인 도로(8,675.25㎡)에 대해
 - ‘14년 사업시행자가 파산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 실효된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공매 취득한 원고가 서울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1심)에서 피고인 서울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를 가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362억 39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표]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판 결 금	이 자 (연 5%)	이 자 (연 12%)	비 고
			'22.05.26. ~ '22.09.30.	'22.10.01. ~ '22.10.21.	
지급비용	36,238,571,042	35,374,086,517	620,257,955	244,226,570	일(田)이자(연12%) 11,629,836원/일

- 다음으로, ‘금호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증액 소송 판결금 지급’전은 성동구 금호동 “금호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었으나

[표] 보상액 산정내역

수 용 대 상	이익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증액(원)
손실보상금	2,229,390,000	2,332,670,000	103,280,000
잔존건물 보수비	628,850,000	2,979,506,759	2,350,656,759
잔존건물 가격감소분	-	326,006,800	326,006,800
합 계	2,858,240,000	5,638,183,559	2,779,943,559

- 원고인 전 토지소유주는 보상금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감정 금액이 채택되어 판결금(27억 8천만원), 이자(1억 19백만원), 기타 공탁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35억 79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 마지막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전은 서울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사건토지(강동구 천호동 417-2(도로 542㎡), 425-2(도로 800㎡), 280-2(585㎡))에 대해 토지소유주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 서울시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를 사용했음이 인용되어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임료 지급을 위해 예비비 7억 35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 참고로, 재판부는 서울시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2021다211662)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토지조사부⁴⁾에 기재되어 있는 각 토지 사정명의인과 그로부터 나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고,
- 시의 1차 점유취득시효⁵⁾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인 토지소유주에 대항할 수 없으며, 2차 점유취득시효는 2018년경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로 중단되었음을 들며 1,2차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등 총 7건에 10억 71백만원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 함에 따른 것임.

4) 일본제국은 1910년 8월 22일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 고종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대한제국을 일본국으로 복속시킨 후 조선총독부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한 뒤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작업을 시작함.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임야를 제외한 땅에 대한 경계측량과 더불어 소유관계/면적/등급/분쟁지 등을 조사함.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공문서 중의 하나가 토지조사부이며, 최초의 토지대장은 이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짐.

5)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음.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과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201-02 공공운영비	537	143	26.6%
		207-02 전산개발비	100	100	99.7%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207-02 전산개발비	412	132	32.0%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207-02 전산개발비	585	170	29.0%
도로관리과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	207-02 전산개발비	445	66	14.9%
도로관리과	지하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207-01 연구용역비	80	24	30.2%
		207-02 전산개발비	562	18	3.2%
도로관리과	도로통합플랫폼 및 도로노후시스템(재)구축	207-02 전산개발비	530	152	28.7%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1-01 시설비	1,733	267	15.4%
계			4,984	1,071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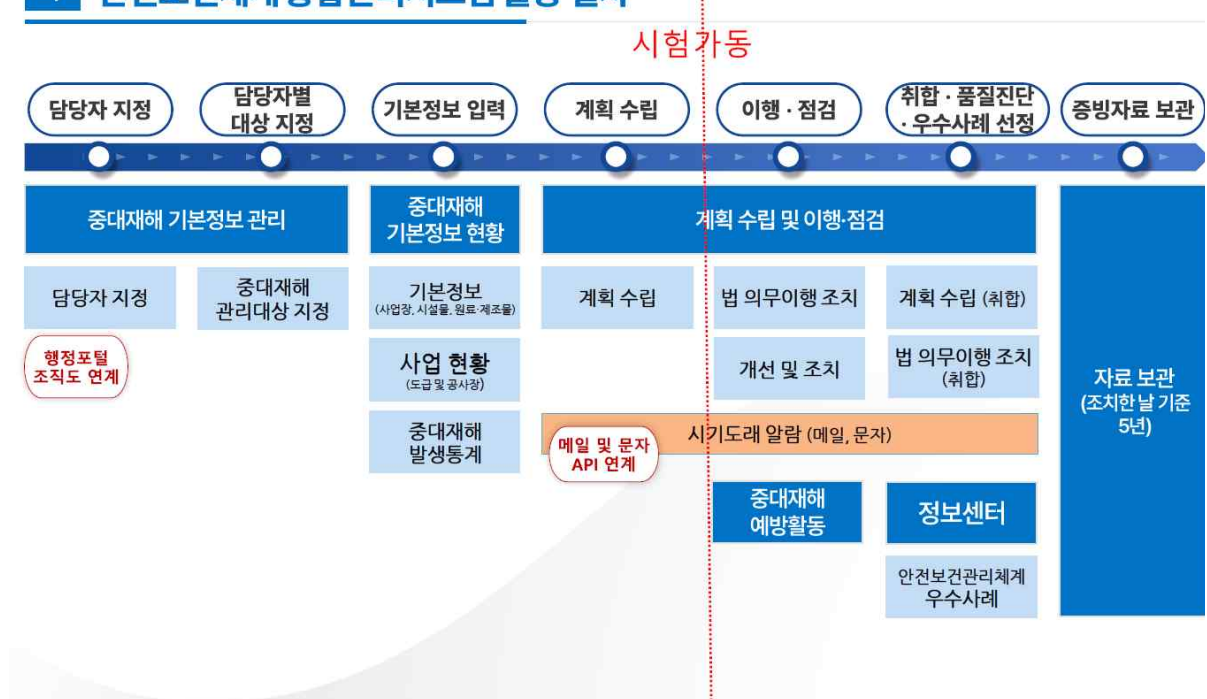
○ 먼저,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사업에서는 당해연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억 37백만원 중 26.6%인 1억 43백만원과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억원 중 99.7%인 9,966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기반터)’과 연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 국토교통부의 기반터 시스템 구축용역⁶⁾의 완료시점(‘23.2월 예정)을 고려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서울시 용역의 발주 및 착수가 이뤄지면서 이월하게 된 것임.

-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⁷⁾에 의거 관리대상별 확보의무 이행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용역으로 '23년 6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전산개발비 예산 현액 4억 12백만원 중 32%인 1억 3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4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절차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시스템 구축 용역 개요 >

- ▶ 사업기간 : '20.6.26 ~ '21.6.25 .사업비 : '20년 11억원(SP 기준 총 150억원)
- * 총기간 : 4년('20~'23) / 1차년(행정기능, DB관리), 2차년(분석기능), 3차년(생애주기비용), 4차년(시스템연계)
- ▶ 수행기관 : 유니콘스(주), (주)지쓰리웨이 공동
- ▶ 주요기능 : 시설관리현황·유지관리현황·재정투입현황 DB 관리, 관리시설 생애주기비용·성능저하시점·성능향상비용 분석기능 제공,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운영지원

6)

- 7)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시스템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소 및 시설물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 후 중대재해 예방·안전계획, 법 의무사항 이행조치 사항 등을 저장하고 각 단계별 일정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메일 및 문자로 알람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행정 포털과 연계되어 '23년 7월 전면 개통될 예정임.

- ‘제설대책추진’사업은 예산현액 5억 85백만원의 29.0%인 1억 7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제설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겨울철 도로의 기능유지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기반 도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이 '23년 5월 준공됨에 따른 것임.

<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제설대책추진)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22.7.25.~'23.5.24.)
- 사업비 : 금 585백만원
- 사업목적
 -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제설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설현장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도로의 기능유지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개발 추진
 -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과 ‘지하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은 '21년부터 시작된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 발주 당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차년도 사업 또한 준공일이 차년도로 연기되면서 이월이 발생함.

- 이처럼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사전절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는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연내 소진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당부된다 하겠음.

<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 >

- 사업기간 : 1차: '21.12.21. ~ '22.05.20, 2차: '22.06.21. ~ '23.01.20.
- 사업비 : 금 445백만원
- 사업목적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지형변화구간에 대해 GIS DB를 갱신하고 포장도로 및 제설현장 등의 도로정보시스템에 반영, 도로 유지관리 업무 지원
- 사업내용
 - (1차) '21.12.~'22.05. : 자료수집 및 갱신정보 검수 기능 구축
 - (2차) '22.06.~'23.01. : 지형변화구간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갱신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지형변화구간 수치지형도 갱신
 - DB갱신 검수를 위한 기능 개발

< 지하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

- 사업기간 : '22.8.29~'23.2.28(1차: '21.10.29.~'22.08.28.)
- 사업비 : 225,374천원(1차 포함시: 1,304,861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사업기간	'21.10.~'22.8.	'22.8.~'23.2.
사업비	1,079,487천원(감비포함)	225,374천원(상용SW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1차, 전산용역)
 - 지하시설물 등 각종 지하 정보 통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조사 관리 등
 -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모델 개발, 모의훈련관리 개발 등(2차, 학술+ 전산용역)

- 마지막으로 ‘도로통합플랫폼 및 도로노후시스템(재)구축’사업은 '23년 6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지급기한이 미도래하여 예산현액 5억 3천만원의 28.7%인 1억 52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발생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이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는

사고이월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 예산편성 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신속한 용역 발주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로통합플랫폼 및 도로노후시스템(재)구축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22.7.25.~'23.5.24.)
- 사업비 : 금 530백만원
- 사업목적
 - 2022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시 타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시스템을 재개발하고 통합플랫폼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 제공 및 도로정보시스템 재개발시 개발기간 단축 및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사업비 절감 기여
- 사업내용
 - 도로통합플랫폼 구축 및 도로관리시스템 재개발 추진
 - 통합플랫폼 구축, 회원통합,DB통합,연계모듈 공동 활용,메타데이터 관리
 -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39,641	4,055	-	-	124 (-124)	-	43,696	24,233	19,069	4,503	14,566	-	393 (0.9%)
2021	17,300	7,812	-	-	11 (-11)	-	25,112	20,664	4,055	800	3,255	-	394 (1.6%)
2020	1,050	23,621	-	-	-	-	24,671	16,311	7,812	1,040	6,772	-	548 (2.2%)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396억 4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5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36억 9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2억 3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 6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3억 9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등 4개 사업의 불용률은 0%~5.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불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표] 참조).

[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 분담금 계정)	29,022	20,088	182	0.6%
2	도로계획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021	221	0	0.0%
3	도로계획과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8,853	3,332	4	0.0%
4	도로계획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	3,800	592	208	5.5%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 1건에 1억 24백만원으로 이는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감리기간이 순연됨에 따라 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 길)입체화(교통 개선분담금 계정)	401-01 시설비	27,353	124		'22.12.26.	추가 감리비 소요충당을 위한 예산 변경
				401-02 감리비	1,355		124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145억 66백만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 선분담금 계정)	401-01 시설비	27,429	8,318	30.3%
		401-02 감리비	1,574	435	27.6%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01-01 시설비	1,671	213	12.8%
		401-02 감리비	350	83	23.7%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01-01 시설비	8,129	5,481	67.4%
		401-02 감리비	710	36	5.1%
계			39,863	14,566	36.5%

- ‘제2자유로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에서는 시설비 예산현액 274억 29백만원 중 30.3%인 83억 18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15억 74백만원 중 27.6%인 4억 35백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 이는 공사장(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교차로) 주변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개최하는 하늘공원 축제 협조를 위한 공사 중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자재수급 차질 발생, 도시숲 심의(‘22.11.) 및 가로수와 떠돌이 관련 마포구청과의 협의로 인한 조정공사 지연에 기인한 것임.

- 동 사업은 ‘구룡사거리 교량확장’, ‘월드컵아파트3단지 앞 교차로의 신호연동’,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등 교차로 3개소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위치도]

- 동 사업은 ‘14년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한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을 사유로 ‘17.1월 기본설계 및 ‘18.5월 실시설계 완료하기까지 5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공사개시를 목표했던 ‘19년 역시 착공 지연(1월→9월)으로 당해연도 편성예산을 이월하였으며,
- ‘20년에는 구룡사거리 구간에 대한 파주운정3지구와 고양창릉지구 간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지연 및 천공작업 중 매립폐기물층의 각종 쓰레기로 인해 오거비트 작업 간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 '21년부터는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를 개시하여 '22.10월 지하차도를 개통하고, 지하차도 상부도로 복구공사 추진 중 상기 지연사유 발생으로 인해 금회까지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사업개시부터 당해연도 결산시점까지 사업지연의 일부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사전절차 이행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는 사업정상추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이제까지 장기간 반복된 예산의 이월 및 공기 연장에도 일조한 바가 적지 않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제정)'사업에서는 시설비 예산현액 81억 29백만원 중 67.4%인 54억 81백만원과 감리비 7억 1천만원 중 5.1%인 3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1.7월 실착공 이후 토공 및 구조물 공종 하도급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하도급사의 소극적인 현장운영 등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어렵다 판단하여 '22.4월 타절하고 같은 해 9월 하도급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 '22.10월 지하차도 추진기지 강관 매립과 관련해 설계 당시와 지층구조가 상이(모래질자갈층→실트질모래)함을 발견하여 추진방법을 변경(종점부 일괄추진(일방향)→종점부+중앙부 양방향(1/2씩) 순차적 추진)하고 이를 검토하는 기간 등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하도급사 승인 과정에서 하도

급사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
음.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수납률(%) (B/A)
2022	3,825	3,825	3,825	3,825	-	-	100%
2021	5,113	5,113	5,972	5,972	-	-	100%
2020	5,113	5,113	88,513	88,513	-	-	100%

가) 개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38억 25백만원으로 이는 ‘태릉~구리IC 확장 사업’의 국고 보조금으로 전액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3,825	17,184	-	-	-	-	21,009	16,686	4,322	-	4,322	-	71 (0.3%)
2021	44,468	776	-	-	-	-	45,244	28,036	17,184	7,676	9,508	-	25 (0.1%)
2020	98,740	14,377	-	-	1,108 (-1,108)	-	113,117	111,626	776	90	686	-	715 (0.6%)

가) 개 요

- 예산액 38억 2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8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0억 9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6억 8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2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천 1백만원이 발생함.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등 3개 사업의 불용률은 0%로 양호하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표] 참조).

[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6,508	16,508	68	0.0%
2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676	125	3	0.0%
3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825	54	0	0.0%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사가정길 ~ 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태릉 ~ 구리 IC간 도로확장’사업의 시설비 일부를 사고이월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401-01 시설비	612	488	79.6%
		401-02 감리비	64	64	100.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3,825	3,771	98.6%
계			4,501	4,322	96.0%

- ‘사가정길 ~ 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은 강동구와 구리시 및 중랑구를 연결하는 한강횡단 도로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6억 12백만원 중 79.6%인 4억 88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6천 4백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 2006년 6월 공사에 착수한 암사대교는 2014년 11월 21일 용마터널과 동시 개통하고 2016년 12월 암사대교 본선교량 공사를 준공했으나,
- 사업인가조건(중로3-26호선 도로개설, 대체녹지 조성) 이행을 위해 현재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로3-26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해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비 및 감리비가 5억

9백만원,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4천 3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사업인가조건

< 중로3-26호선 도로개설 >

- 추진근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사항(2009. 2. 19.)
 - 한강둔치 내 제외지상 진출입부 추가 개설
- 위 치 : 구리시 토평동 781-16 ~ 교문동 611-6
- 규 모 : 폭 12m, 연장 200m
- 사업기간 : 2018. ~ 2023. (사업비 : 18억원)

< 대체녹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

- 추진근거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조건사항(2008. 4. 24.)
 - 아천IC 교통광장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상응하는 대체녹지 조성하여 환경 2등급 수준
이상으로 유지
- 용역목적 : 당초 조성예정지(구리시 사노동 산175-21, 면적 55,684㎡ 규모)의 녹지 기능
회복으로 대체녹지 변경대상지 조사 용역 수행
- 용역기간 : 2022.7. ~ 2023.7. (용역비 : 85,554천원)

- 암사대교 본선 공사 준공이후 사업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7년
여가량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
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은 서울 중랑구와 구리 인창동
간 광역도로(연장 4.78km(서울시 1.38km, 민자 1.77km, 구리 1.63km))를
확장(폭 6→8차로(서울시구간), 폭 4→6차로(구리시 구간))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38억 25백만원 중 98.6%인 37억 71백만원을 사
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12조⁸⁾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 구리시, 민자 구간

으로 이뤄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통합하여 연계추진 중에 있음.

- '16.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19.8월 구리시는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광역상수도 이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621억원→2,023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 '19.11월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해 '21.8월 완료(B/C 1.42, 총사업비 1,645억원)하였으며 보상비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와 재협의를 '23.2월에야 완료됨에 따라 '22년 국고보조금 37억 71백만원이 이월된 것임.
- 이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로 인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8)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2	98,396	98,396	78,296	78,296	-	-	100%
2021	251,500	251,500	255,500	255,500	-	-	100%
2020	378,000	378,000	327,600	327,600	-	-	100%

가) 개 요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983억 9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82억 96백만원으로 201억이 감소했는데, 이는 '22년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채 발행 금리가 4.45%에 달해 발행시점 기준 실제 소요액으로 축소하여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임([표] 참조).

[표] '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수납액) 차이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차이 (B)-(A)	비고
총 계			87,000	66,900	20,100	
1	도로 계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0,000	9,500	△500	'22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지방채 발행 금리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월 예상 금액 제외한 실제 소요액만 '22.12월 지방채 발행(66,900백만원)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남
2		신림~봉천터널	22,500	22,400	△100	
3		월드컵대교 건설	14,500	-	△14,500	
4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31,000	26,000	△5,000	
5		양재대로 구조개선	9,000	9,000	-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화 및 지방채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가능성과 전위효과⁹⁾에 의한 지출예산의 지속적인 팽창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753,144	80,354	3,470	194 (-194)	956 (-956)	74,796 (-13,709)	898,055	729,961	120,886	23,711	97,175	-	45,835 (5.1%)
2021	876,637	145,241	-	-	1,542 (-1,542)	-	1,021,877	913,125	80,354	16,985	63,369	-	28,398 (2.8%)
2020	820,708	135,721	-	-	3,997 (-3,997)	-	956,430	729,329	145,241	49,782	95,459	-	81,860 (8.6%)

가) 개 요

- 예산액 7,531억 4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3억 5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980억 55백만원으로 이 중 7,299억 61백만원을 지출하고 1,208억 8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지출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458억 35백만원임.

9) 전위효과가설: 전쟁·공황과 같은 비상시에 증액된 조세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관막효과(瓣膜效果, ratchet effect)로 인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는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는 피콕(Alan T. Peacock)과 와이즈만(Jack Wiseman)의 가설을 말한다

나) 집행잔액(불용액)

- '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458억 35백만원)과 불용률(5.1%)은 전년도 대비(불용액(283억 98백만원)과 불용률(2.8%)) 다소 증가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 등 32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안전총괄과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	92	51	41	44.8%
2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1,439	10,508	361	3.2%
3	도로계획과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1,336	336	730	54.6%
4	도로계획과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16,380	12,284	2,670	16.3%
5	도로계획과	사당로 (구) 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2,196	1,856	340	15.5%
6	도로계획과	노들로 구조개선	10,383	3,907	363	3.5%
7	도로계획과	고가차도 철거	12,044	1,708	10,142	84.2%
8	도로계획과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4,999	1,752	2,247	44.9%
9	도로계획과	용마산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58	39	19	33.4%
10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80,299	73,546	2,882	3.6%
11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2,510	37,079	1,138	2.7%
12	도로관리과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13,574	12,124	1,450	10.7%
13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8,551	7,649	527	6.2%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4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2,639	2,105	329	12.5%
15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12,560	11,458	807	6.4%
16	도로시설과	시흥천1복개 보수	736	514	222	30.2%
17	도로시설과	청계천복개(우안) 보수	62	42	20	32.8%
18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4,270	2,346	476	11.2%
19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10,687	9,223	966	9.0%
20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방호	6	3	3	44.1%
21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10,914	5,688	3,133	28.7%
22	교량안전과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6,686	212	6,473	96.8%
23	교량안전과	동작대교 보수공사	3,347	2,862	485	14.5%
24	교량안전과	한남대교 보수공사	4,000	3,572	428	10.7%
25	교량안전과	잠실대교 보수공사	2,500	2,139	361	14.4%
26	교량안전과	원효대교 보수공사	2,300	1,959	341	14.8%
27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917	11,466	451	3.8%
28	교량안전과	군자교 보수공사	1,668	1,312	356	21.3%
29	교량안전과	현저고가 보수공사	1,048	527	521	49.7%
30	교량안전과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500	0	500	100.0%
31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1,723	9,140	1,150	9.8%
32	교량안전과	긴급복구용 가설교량 조립 및 해체	150	94	56	37.7%

-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종각역 북측 지하공간에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활용한 지하정원을 조성해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9천 2백만원 중 44.8%인 4천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당초 태양의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노동자 2명을 12개월 동안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17년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¹⁰⁾” 추진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채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 안전총괄과는 조직담당관에 공무원 채용 요청을 했으나 시 여건상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해당 기간제 노동자를 8개월(‘22.2.7~9.30.) 동안만 채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8개월만 유지관리 인력을 채용했던 것과 관련해 시는 “조경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봄부터 가을 사이인 8개월 간 채용”했다는 설명이나 나머지 4개월 동안은 관리인력 없이도 관리상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1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2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이 같은 정규직 전환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당부됨.

10)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단계별로 추진 중임.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7.7.20.)하고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2017.10.25.)함.

- 한편, '23년부터는 유지관리 전문용역을 통해 관리 중이나 당해연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기간 단축을 사유로, 그리고 과거 '20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설유지관리용역 미시행, 시설기사 및 시설경비 불필요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 등의 사유¹¹⁾로 편성예산 대비 높은 비율로 불용이 발생했던 점에서 살펴볼 때
- 유지관리 전문용역의 과업 및 용역비의 적정성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효율화된 최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사업은 시도상의 자치구 관리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26억 39백만원 중 12.5%인 3억 2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집행잔액 중 1억 7천만원(예산현액의 6.5%)은 당초 서대문구 미동초교 앞 보도육교에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을 설치하고자

11) ['20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20회계연도 불용은 '시설비'에서 2억 9천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억 4천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천 1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시설비'는 당초 청소관리(3천 7백만원), 시설기사(1억 4백만원), 시설경비(1억 3백만원)의 시설유지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2억 44백만원을 편성(전년도 이월 예산 제외)하였으나 전체 용역을 미시행함에 따라 전액 불용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청소관리는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에서 녹지관리, 큐레이터 요원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행토록 하였으며, 시설기사 및 시설경비 요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당 용역비의 미집행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이는 예산을 비과학적으로 편성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녹지관리요원과 큐레이터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당초 별도 용역으로 시행하려 했던 청소관리 업무까지 추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고유 업무는 물론 청소업무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그 외에도 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간제노동자의 퇴직 및 신규채용 등으로 실지급된 월별 급여 및 보험료가 근무자 2인의 정상근무를 가정해 편성한 예산액보다 적어 당초 편성액(8천 1백만원) 대비 38.8%인 3천 1백만원을 불용함.

실시설계비를 자치구에 재배정('22. 11월) 했으나 설계발주가 지연('22.12.14. 시행, '22.12.28. 개찰)되어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된 것임.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교통약자에게는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라 여겨지는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에 예산만 재배정할 것이 아니라 재배정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한강교량 방호’사업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방호초소 운영 및 근무자(공공안전관) 순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6백만원 중 44.1%인 260만원을 불용하였음.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¹²⁾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한강교량은 행주대교 1개교로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상시 방호업무를 유지해왔으나
- 인근 군시설이 철거·철수하는 등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22년 9월 국가중요시설 해제를 요청('23. 4. 7. 해제)하면서 방호초소 노후물품 교체 등 환경정비를 보류하고 미실시함에 따른 것임.

○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1980년에 건설되어 노후화된 2등급

12)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DB-18)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DB-24)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내구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109억 14백만원 중 28.7%인 31억 3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1월부터 가교를 설치하여 본교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가교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협의 난항으로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한강환경유역청의 세굴방지공 추가설치 요구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서울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활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대안을 위해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¹³⁾'을 실시하였으며
- 보도를 활용하고 좌우 양측에 캔틸레버를 추가하여 기존 6차선 통행과 공사구간을 동시 확보하는 5분절 시공으로 변경(당초 3분절 시공으로 설계)하여 현재 설계변경 심의 중(6월 중 완료 예정)으로 7월부터 착공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가교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21년도 제2회 추경에서 가교설치비 40억원을 감액하고 21년도 예산현액의 46.2%인 80억 56백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으며,

13)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

○ 교통모니터링 (2021.12.~2022.06.) - (주)선트래픽

: 월드컵대교, 서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파악, 교통소통대책 1~3(안) 비용산정,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재무적 타당성분석, 기술협의 등

○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 (2021.12.~2022.08.) - 동부엔지니어링(주)

: 과업 범위: 교통소통대책 1~3(안) 기본 및 실시설계, 장단점, 경제성, 구조안정성 비교검토 후 최적(안) 도출, 설계VE,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문 및 심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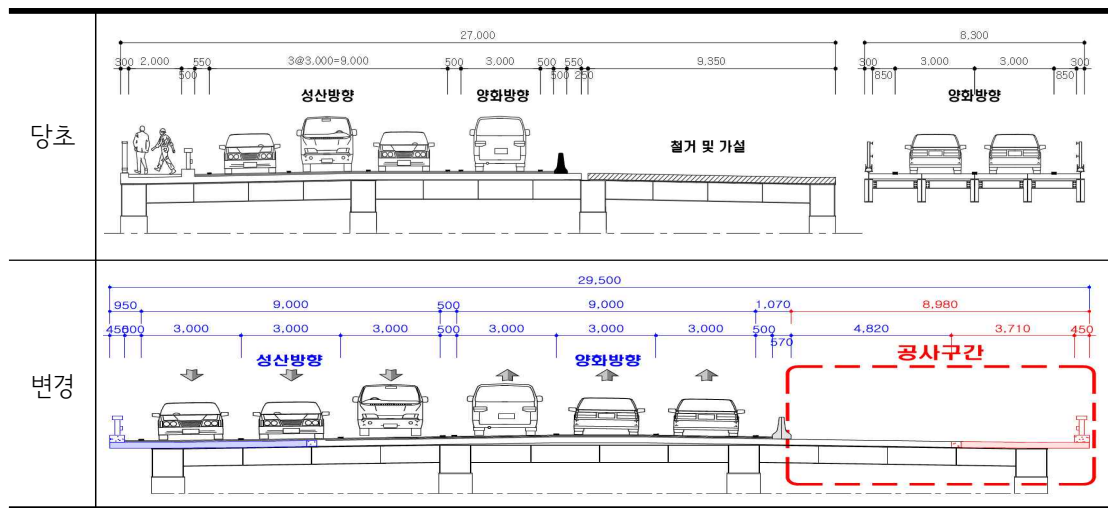
- 당해연도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22년도 제2회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70억원을 감액하고 '21년 사고이월예산 중 재이월이 불가능한 31억 33백만원은 불용하였으며 20억 93백만원은 '23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임.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변경안**

○ 현재 변경 검토중인 공사(안)

구 분	당 초(가교 설치)	변 경(가교 미설치)
차로운영	☐ 상시 6차로 확보 ☐ 가교 2차로+기존도로 4차로	☐ 상시 6차로 확보 ☐ 기존 보도 활용
교통전환	☐ 가교로 2차로 교통전환 후 2차로씩 바닥관철거 및 설치 공사시행	☐ 기존 도로내에서 교통전환 후 1,2차로씩 바닥관철거 및 설치 공사시행

○ 대표 횡단면도(안)



- 공사비 외에도 가교 설계비 2억 97백만원(총 설계비 25억 1백만원의 11.1%)은 매몰되었고, 교통대책 재수립으로 용역비(8억 14백만원)가 추가로 투입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치 못하고 예산은 이월이 반복되면서 결국 불용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사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 참고로, 본교 성능개선공사와는 별도로 프리캐스트(PC) 바닥 판 하부에서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였던 남단과 북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적인 공사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대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고 공기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사업’은 한강대교(남단) 아치교 교각을 활용한 공중보행교(B=8m, L=500m)를 신설하려던 사업으로 공사가 타절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현액 66억 86백만원 대비 96.8%인 64억 73백만원의 시설비와 감리비를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19년 개장한 노들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년에 사업의 타당성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공사 발주가 순연되어 '20회계연도 예산현액 70억원 중 99%인 68억 96백만원을 '21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 또한, '21년 5월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을 준비하는 와중에 시는 ‘노들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마스터 플랜’을 포함한

「국가중심공간 조성계획」(‘21.8.~‘22.8. 광화문광장사업과)을 새로이 추진하면서 결국 동 사업은 중단함에 따라 ‘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 50억원을 감액하고 21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의 97%인 66억 86백만원을 다시 사고이월한 바 있음.

- 이처럼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서울시는 '22년 8월 백년다리 조성사업의 대안인 '노들섬 연결보행교 조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동 사업을 타절하기로 결정하여 타절에 따른 정산액 2억 13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4억 73백만원을 불용하게 된 것임.
- 동 사업은 기본계획 및 설계 당시부터 미관 및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이 결국 중도 타절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예산 측면에서도 설계공모(38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15억원), 공론화(86백만원), 타절 정산(2억 13백만원) 등에 따른 총 18억 37백만원이 매몰됨은 물론, 대규모 예산을 명시이월했다가 또 다시 사고이월하고 결국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리하는 등 상당한 예산 낭비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 대형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착수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월되는 등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

의가 당부된다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하는 한편, 한강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보행교를 건설하고자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노들섬 설계공모('22.11월~'23.2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총괄실에서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2023 회계연도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바, 계획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백년다리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사업]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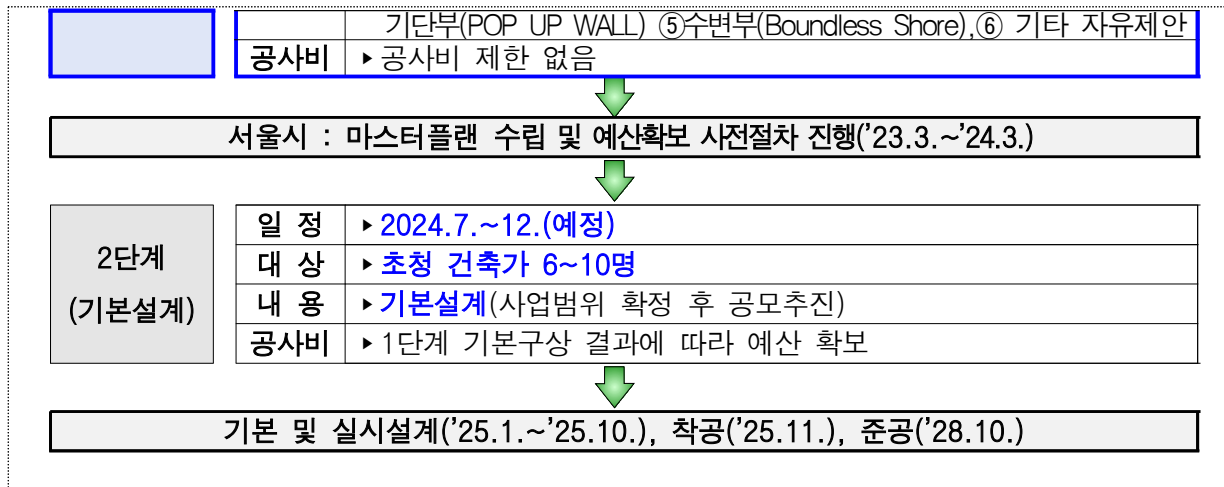
- 위 치 : 노들섬 서쪽~한강 복단 둔치 등
- 사업목적 : 노들 예술섬 구상 및 한강 그레이트 선셋 추진 등과 함께 노들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행교 건설
- 규모/사업비 : 설계공모('22.11.~'23.2.) 수상작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 용 역 비 : 5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설계공모 시행 시 다양한 디자인 및 접근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들섬 보행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비를 편성함

☐ 향후일정

- 22년 ~ 23.2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3월 ~ 10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안전총괄실)
- 23.11월 ~ 24.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4년 하반기 : 공사 발주
- 25년 상반기 : 공사 착공

☐ 노들섬 설계공모 전체일정 계획

1단계 (기본구상 디자인)	일 정	▶2022.11.~2023. 2.
	대 상	▶초청 건축가 6~10명
	내 용	▶기본구상 디자인(디자인 구상, 규모, 소재, 공사비 등) ①접근로(Art Bridge), ②공중부(Roof Observatory, Sky Walk), ③지상부(맹꽁이 숲 ECO Garden + 노들마당 및 시설군 ART Garden) ④



- ‘현저고가 보수공사’는 서대문구 현저동 성산로 상에 위치한 현저고가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내구성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현액 10억 48백만원 중 49.7%인 5억 21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현저고가차도 전경]



[공사 범위(연석, 캔틸레버) 현황]

- 이는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1억 35백만원과 정비계획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87백만원으로 당초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연석부 및 캔틸레버 하면 단면보수, 바닥판 하면 단면보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 '22. 8월 발주처, 공단, 시공사의 현장합동점검 결과, 고가상부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바닥판 단면보수 작업시 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렵고 고가하부로 단면파손에 의한 낙하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공정을 보류함에 따른 것임.
 - 한편, 바닥판 단면보수를 실시하기 전에 손상에 대한 원인분석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3년 정기 정밀안전점검과는 별도로 노면 유입수 경로 및 상판 손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편성한 상황¹⁴⁾으로,
 - 지속적인 우수유입은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고가차도의 일일교통량이 크고 고가차도 하부에도 차량이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중요도로시설물인 만큼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손상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사업은 한남대로27길 주택가 도로변에 방음벽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으로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억원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 소음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소음기준을 상회하지 않고 방음벽 설치 시 시민의 남산경관 조망 방해가 우려되며 방음벽 설치

14) 제7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2023.6.2.)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하였음.

를 위한 바닥판 보강 등으로 약 15억 48백만원의 상당한 비용이 요구됨과 동시에,

- 당초 설치 의무자인 인근 공동주택 소유주가 방음벽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한남1고가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소음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그 실효성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여 중단함에 따른 것임.
- 사업을 추진한다해도 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판단했어야 함에도 일단 편성부터 하고 추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것은 사업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처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등을 통해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사업에서 1억 94백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음.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시 설과	자동차전용 도로 관리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403-02 공기관등에대 한자본적위탁 사업비	405	194	-	'22.04.15.	강설예보에 따른 잦은 비상발령 대기로 제설용역비(경 상적위탁사업비) 증가
				308-11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780	-	194		

- 이는 기상청 강설예보에 따른 비상발령 횟수 증가로 용역인부 및 장비 대기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용역비가 증액되어 상반기 용역 준공 대금 부족분과 하반기 제설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제설제 구매비(2억 11백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예산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표] 최근 3년간 제설 비상발령 현황

(단위: 회)

구분	비상발령 횟수					비고
	계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19/20 ('19.11.15 ~ '20.3.15)	13	8	5	-	-	
'20/21 ('20.11.15 ~ '21.3.15)	27	9	11	7	-	
'21/22 ('21.11.15 ~ '22.3.15)	23	14	7	2	-	

라) 이 체

-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이체는 11건에 610억 88백만원 순증으로, 도시교통실에서 8건 610억 88백만원 이체받았으며, 3건 137억 9백만원은 안전총괄실 내부 이체건임.

- 이는 2022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교통실 보도 유지관리 관련 조직 및 업무를 안전총괄실 내 ‘도로관리과’로 이관, 안전총괄실 내 노후 도로조명시설 관리업무 담당부서 변경(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 등에 따른 것임.

[표] 안전총괄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이체 내역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24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4	24	-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	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	2	-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16,80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6,800	16,800	-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	-	1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2	12	-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	-	5,70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5,700	5,700	-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	-	38,446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38,446	38,446	-
7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	-	3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3	3	-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	10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00	100	-
9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	-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3	3	-
10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401-01 시설비	-	-	13,50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401-01 시설비	13,505	13,505	-
1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401-01 시설비	-	-	20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401-01 시설비	201	201	-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8건에 9억 56백만원으로,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음.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내부순환로(월곡 C) 진출연결로 신설	401-01 시설비	4,500	139	0	'22.12.22.	감리비 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401-02 감리비	500	0	139		
2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5,602	23	0	'22.12.13.	주차장 해체감리 용역 시행을 위해 예산통계목 변경
				401-02 감리비	698	0	23		
3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1,800	198	0	'22.6.3.	안전분야를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추가 배치 등 감리비 추가확보 필요
				401-02 감리비	200	0	198		
4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다정도로(차도)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890	206	0	'22.7.11.	공사감리 발주를 위해 시설비->감리비 예산변경
				401-02	0	0	206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감리비					
5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1,000	71	0	'22.8.16.	기본설계 용역 감리비 확보를 위한 변경
				401-02 감리비	0	0	71		
6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신당역~신당지하 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2,500	100	0	'22.12.14.	감리비 확보를 위한 변경
				401-02 감리비	0	0	100		
7	교량 안전 과	일반교량관리	중차량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영	207-02 전산개발비	577	115	0	'22.12.19.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S/W 구매
				201-01 사무관리비	0	0	115		
8	교량 안전 과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2,719	104	0	'22.7.20.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감리비 부족분을 위한 시설비 변경사용
				401-02 감리비	1,023	0	104		
총 변경건수: 8건					23,009	956	956		

- 먼저, ‘내부순환로(월곡IC) 진출연결로 신설’ 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39백만원을 변경사용했는데,
 - 이는 공사기간 연장(3개월)에 따라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역시 동반하여 연장함에 따른 것임.
-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사업에서는 ‘22.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각 1억 98백만원과 2천 3백만원을 변경사용했는데,
 - 6월 변경사용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분야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추

가 배치함에 따른 것이며,

- 12월 변경사용은 부분 철거 예정인 화랑대역 공영주차장 건축물(서울시 중랑구 묵동 29)에 대해 '22. 8월 건축물 해체계획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1조¹⁵⁾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해체감리용역비를 충당한 것임.

-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서는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억 6백만원을,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에서는 기본설계 용역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천 1백만원을 각각 변경 사용했는데,

-
- 15)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이들 변경사용은 예산편성 당시 미편성했던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이중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의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비 확보를 위한 변경사용은 ‘21.6.9일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대책(‘21.8.10.)’의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감리 배치기준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의 기본설계 용역 감리비 확보를 위한 변경사용은 당초 별도의 감리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던 계획에서 서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이에 폐기물 적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고난이도 기술에 해당되어 기본설계 용역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시행방식 등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임.
- ‘중차량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영’사업에서는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15백만원을 변경사용했는데,
- 이는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용역이 프로그램 개발과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 통계목이 전산개발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통계목을 변경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통계목 설정에 보다 주의가 요망됨.
- 마지막으로,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사업에서

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4백 만원을 변경사용했는데,

- 이는 공사기간이 연장(30→44개월)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리비를 증액(20억 55천만원→23억 27백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확보된 감리비가 부족하여 이를 충당함에 따른 것임.

바) 예비비

- 예비비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등 총 3건에 34억 70백 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800	'22.9.6.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도로계획과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1,211	'22.12.28.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459	'22.12.28.	2022년도 하반기 임료 부족분 지급
합계	3건	3,470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건은 (주)교학사 소유의 토지(금천구 가산동 319-27 및 319-7)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 판결금 19억 91백만원과 이자 3억 18백만원에 해당하는 23억 9백만원을 지급하면서 5억 9백만원은 동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액 18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단위 : 원)

구 분	계	판 결 금	이 자 (연 5%)	이 자 (연 12%)	비 고
			'19.08.08. ~ '22.08.10.	'22.08.11. ~ '22.09.07.	
지급비용	2,309,626,982	1,991,481,062	299,813,382	18,332,538	일(日)이자(연 12%) 654,733원/일

- 그러나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건과는 별개로 판결금의 일부를 동 사업 예산 5억 9백만원을 활용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동 사업의 '22년 예산은 강제집행비용, 건물철거 비용, 용역비(지하안전영향평가, 설계안전성 검토 등), 현장관리비 및 현장 안전조치 비용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표] '22회계연도 예산 세부편성내역

과목구분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 강제집행 비용	700,000천원
	○ 건물(교학사)철거 비용	510,000천원
	○ 용역비(지하안전영향평가, 설계안전성검토, 하수암거 안전점검 등)	300,000천원
	○ 현장관리비 및 현장안전조치 비용	380,000천원
	합 계	1,890,000천원

- 당해연도 사업예산 18억 9천만원 중 27%인 5억 9백만원을 판결금으로 지급한 것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측면이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¹⁶⁾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편법적인 예산집행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시급성과 부득이함은 인정되나 추경이나 예산 탄력 사용의 예외 규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건은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¹⁷⁾(2022.11.23.)에 따른 것이며,
-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건은 서울시도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들¹⁸⁾에서 시가 패소함에 따라 예산 부족 및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부결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22년 하반기 정기 임료를 지급하고자 예비비 4억 59백만원을 지급한 것임.

사) 차년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시설비 등 총 75건에 이월금액은 예산현액(4,967억 9천만원) 대비 12.6%인 971억 75백만원임([표] 참조).

16)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7)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18) 판결문(2016가단5237199), 판결문(2016가단5196182), 판결문(2018가단5161227), 판결문(2020가소1386236), 화해권고결정(2020가소1835660), 판결문(2021가단518149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21머586799)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401-01 시설비	11,139	569	5.1%
도로계획과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4,361	1,345	30.8%
도로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700	350	50.0%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5,579	2,043	36.6%
		401-02 감리비	721	70	9.6%
도로계획과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401-01 시설비	1,336	270	20.2%
도로계획과	서북-도심 연결 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401-01 시설비	150	46	30.9%
도로계획과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401-01 시설비	15,461	988	6.4%
		401-02 감리비	919	439	47.7%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28,022	61	0.2%
		401-02 감리비	2,100	139	6.6%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52,299	31,609	60.4%
도로계획과	율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3,835	1,481	10.7%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3,484	1,174	33.7%
		401-02 감리비	206	198	96.1%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9,297	4,447	47.8%
		401-02 감리비	838	222	26.5%
도로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1 시설비	62,820	5,957	9.5%
		401-02 감리비	3,211	225	7.0%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	401-01 시설비	800	180	22.5%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노들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9,665	5,874	60.8%
		401-02 감리비	718	239	33.4%
도로계획과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3,500	1,007	28.8%
		401-02 감리비	732	55	7.6%
도로계획과	고가차도 철거	401-01 시설비	11,575	195	1.7%
도로계획과	방학로(신동아아파트 사거리~우이동광장)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551	137	8.9%
도로계획과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5,816	4,771	82.0%
도로계획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401-01 시설비	150	68	45.3%
도로계획과	현릉로 확장	401-01 시설비	4,914	2,414	49.1%
도로계획과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4,999	1,000	20.0%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401-01 시설비	37,878	1,210	3.2%
도로계획과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401-01 시설비	590	137	23.3%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929	650	70.0%
		401-02 감리비	71	65	91.9%
도로계획과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3,040	1,940	63.8%
		401-02 감리비	407	100	24.6%
도로계획과	양재IC 재배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552	285	51.7%
도로계획과	동부간선 수서방면 진입체계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250	131	52.4%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401-01 시설비	5,600	4,991	89.1%
도로계획과	구로IC 도로구조개선	401-01 시설비	200	82	41.2%
도로계획과	성암로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50	39	77.3%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1 시설비	76,558	9	0.0%
		401-02 감리비	2,600	420	16.2%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6,800	487	2.9%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3,194	376	11.8%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01-01 시설비	2,639	205	7.8%
도로시설과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500	157	31.5%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염해 개선방안 용역	401-01 시설비	100	41	40.5%
도로시설과	보행육교 건립 타당성 조사	401-01 시설비	100	78	78.4%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2,560	295	2.3%
도로시설과	호암2터널 보행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913	700	76.7%
도로시설과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401-01 시설비	1,846	1,243	67.3%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3,464	419	12.1%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900	521	57.9%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3,789	1,396	36.8%
		401-02 감리비	81	51	63.9%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401-01 시설비	2,349	1,206	51.3%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1 시설비	1,644	371	22.6%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9,912	499	5.0%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9,556	1,500	15.7%
		401-02 감리비	1,358	593	43.7%
교량안전과	중차량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영	207-02 전산개발 비	462	110	23.9%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9,000	2,874	31.9%
		401-02 감리비	990	446	45.1%
교량안전과	장월교 개축공사	401-01 시설비	2,896	690	23.8%
		401-02 감리비	360	53	14.8%
교량안전과	충정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1,368	204	14.9%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량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공사	401-01 시설비	1,273	950	74.7%
		401-02 감리비	156	102	65.2%
교량안전과	수출의다리고가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795	475	59.8%
교량안전과	보라매고가 보수보강공사	401-01 시설비	2,000	757	37.8%
교량안전과	도림천고가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2,339	220	9.4%
교량안전과	오류철도고가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1,900	1,065	56.1%
교량안전과	모래내고가 성능개선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	401-01 시설비	200	24	12.1%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11,723	1,432	12.2%
계(총 75건)			496,790	97,175	12.6%

○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사업에서는 시설비 예산현액 55억 79백만원 중 36.6%인 20억 43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7억 21백만원 중 9.6%인 7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해당 공사의 램프구간에 간섭되는 지상 3층 화랑대역 공영주차장 건축물의 부분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22.8월 건축물 해체계획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 당초 예정되어 있던 부분철거공사가 동법 제30조¹⁹⁾에 따라 건

19)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 해체심의 대상이 되어 해체심의 및 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소요로 인해 후속공정이 지연됨에 기인한 것임.

○ 공작물(공용건축물) 해체공사 추진경위

- '22.10.19. : 중량구(건축과) 질의회신 결과 해체심의 대상
- '22.11.10.~12.11. : 해체심의 및 허가 행정절차 소요로 공사 중지
- '22.11.25. : (공용)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처리(부분해체)
- '22.11.28. : (공용)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알림(중량구 건축과)
- '22.12.06. : 건축공사 해체감리용역 계약체결
- '22.12.09. : (공용)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서 처리 알림(중량구 건축과)
- '22.12.12. : 건축공사 재개
- '23.01.25. : (공용)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 알림(중량구 건축과)

- 따라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해당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해당 법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건축물 철거 공정이 포함된 공사들의 공정계획 수립 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절차이행계획 수립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 ‘월드컵 대교 건설’ 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 522억 99백만원 중 60.4%인 316억 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 이는 강서구 및 양천구 지역주민 민원에 의해 추가설치되는 연결램프에 대한 설계를 '20.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나 하천 내 분류하수관로, 지역난방관로, 광역상수도, 통신 등 다량의 지장물이 발견되어 이를 이설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 '22년 하절기 빈번한 강우로 하천 내 공사에 어려움²⁰⁾이 있어 절대적인 공사일수가 부족해짐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22년 7월 제2차 추가정정예산 편성 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당초 시설비 예산 734억 21백만원 중 38%인 280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
- 추정에서 감액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이같이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부실한 사업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당초 '10년 3월 착공하여 '15년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또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 연계사업의 추진일정 반영 등으로 인한 반복된 공사지연으로 준공을 '22.12월로 변경했다가 상기 감추경 사유로 인해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어 재차 준공을 '24년 6월로 연장된 상태인데,
- 당해연도의 시설비 집행실적이 불과 19%²¹⁾인 점에서 살펴보면

20) 집중호우 예보 시 하천 내 장비·자재 철거, 집중호우 이후 하천수위 하강시까지 공사 대기 등

향후 추가적인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하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당해 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34억 84백만원 중 33.7%인 11억 74백만원, 감리비 예산현액 2억 6백만원 중 96.1%인 1억 9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1.9월 교학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승소 이후 지장건물(교학사) 철거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인쇄장비 등의 자진 이전이 지연되었고, 건축물 해체심의, 해체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됨에 기인한 것임.
- 동 사업은 ‘14.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15년 독산동과 가산동 구간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16.9월 독산동 구간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 ‘17년 가산동 구간의 수용재결 신청, 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집행정지 결정 기간: ‘17.8.25.~‘18.2.22.) 등으로 보상이 원활치 않아 ‘17회계연도부터 ‘21회계연도까지 용지보상 및 명도소송 문제로 연례적인 대규모 이월이 반복된 바 있음.
- 당해연도 역시 명도소송 문제의 연장선에서 소유주의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용지확보 측면에서만 5년여의 사업기간이 지체됨.

21)

$$\frac{(\text{당초예산}) - (\text{추가경정예산증감액}) - (\text{사고이월액})}{(\text{당초예산})} \times 100 = \frac{73,420,900 - 28,000,000 - 31,608,819}{73,420,900} \times 100$$

- 따라서, 용지보상 문제가 걸려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공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92억 97백만원 중 47.8%인 44억 47백만원, 감리비 예산현액 8억 38백만원 중 26.5%인 2억 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개봉 푸르지오아파트 방음벽 설치 구간에서 한전주, 도시가스, 신호등 등의 지장물 저축으로 추가 지장물 조사(‘22.05.~‘22.06.), 보완설계(‘22.07.~‘22.08.), 지장물 이설(‘22.09.~‘22.12.)로 인해 공정 추진이 지연됨에 기인한 것임.
-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건설사업에서도 지장물 이설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업지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 여겨지는 바,
- 시는 지장물을 관성적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정확도 및 신뢰도 높은 지하지장물 탐사기술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소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은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96억 65백만원 중 60.8%인 58억 74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7억 18백

만원 중 33.4%인 2억 39백 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동 사업구간이 하천 구역 내 도로로서 「하천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나 '21.10월 공사 착공 후 지속적인 협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지연('22.5.)되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재수급 차질 발생 등으로 인해 공정이 순연되었다는 설명임.
- 이를 근거할 때 당해연도의 이월은 불가피했다 여겨지나 지난 '21회계연도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증 92억 4천만원)하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제1호²²⁾에 따라 재투자심사를 받아 '21.5월 조건부²³⁾로 통과한 바 있고,

22)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불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frac{20}{100} + 150\text{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채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채원의 100분의 50(시·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채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23)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세부내용

사업명	1. 노들로 구조개선
부서명	도로계획과
심사 결과 및 내용	[조건부] ○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되, 단계별로 수요·비용·물량 적정성 및 사업효과 검증 후 추진 ○ 횡단보도·엘리베이터 설치의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고, 가로등은 내용 연수 고려하여 물량 축소
사업비	21,380백만원 (전액시비)

- 당시 투자심사 조건부 사항을 반영한 내역 조정 후 공사 발주('21.8.), 계약('21.10.), 착공('21.11.)이 순연되면서 당초 시설비 예산현액 23억 1천만원 중 87.1%인 20억 13백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당해연도에도 또다시 이월이 발생한 것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가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이처럼 동일한 계속사업에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현릉로 확장**’사업은 도로확장(연장 1.6km, 왕복 6→10차로) 및 내곡IC 연결로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49억 14백만원 중 82%인 47억 7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투자심사('17.5월) 조건²⁴⁾에 따라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설계도서 작성이 '22.9월에야 완료되고 발주절차를 거쳐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게 된 것임.
 - 참고로, 동 사업은 '14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4)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세부내용

연 번	18 (조건부 추진)
사업명	현릉로 확장
부서명	도로계획과
심사 결과 및 내용	○ 연결로 신설에 따른 교통영향 및 현릉로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검토하고 ○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릉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
사업비 (백만원)	○ 28,132(전액시비)

에 착수하여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21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년부터 '22년까지 보상비를 편성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22.7월 토지 분할만 완료하고 '22.12월 실시계획 변경 후 자치구에 보상절차 이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23회계연도에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편성하고 있음.

[표] '20년~'22년 보상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예산현액(보상비)	2,000	2,500	4,914
당초예산(보상비)	2,000	2,500	2,500
추경	-2,000		
명시이월		2,414	2,500
사고이월			2,414

- 이처럼 사전절차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공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대규모 사고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공사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호암2터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안양시 경계구간에 위치한 호암2터널(금천구 시흥동 산75-5~안양시 석수동 산11-19)의 보차도 분리벽(281m)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9억 13백만원 대비 76.7%인 7억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호암2터널(총 연장 605m)의 서울시(281m)와 안양시(324m) 구간의 관리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그림 참조]) 보차도 분리벽의 설치는 안양시 구간과 병행해야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안양시와 병행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
- 공사가 진행중이던 '22년 9월 안양시로부터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²⁵⁾'로 대체 가능한지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 시는 자문회의를 개최('22.10.18.)한 후,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존 설계대로 보차도분리벽을 설치하고 방재 등급에 맞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안양시에 통보('22.10.25.)하고 협의 후 공사를 재개('22.11.2)함에 따라 준공이 연기됨에 따른 것임.

[표] 서울시와 안양시의 공문발송 내역

일시	요청사항	
2022. 9. 19.	안양시 -> 서울시	■ 보차도분리벽을 격벽분리형으로의 보완 및 검토요청 ■ (검토 중 공사 중지 요청)
2022. 10. 25.	서울시 -> 안양시	■ 전문가 자문결과, 보차도분리벽을 보완하여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당초 보행환경개선 취지에 맞게 보차도분리벽 및 방재등급에 맞는 제연설비 설치 타당.
2022. 11. 1.	안양시 -> 서울시	■ 당초 설계대로 보행자 통로를 위한 보차도 분리벽으로 시공 요청
2022. 11. 2.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 호암2터널 보행환경개선공사 재개 알림

25)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본선 터널 내에 터널과 격벽에 의해서 분리하여 화재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통로

- 참고로, 서울시는 '19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와의 협의 중 정식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13억 36백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안양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를 '20년으로 명시이월(10억원)하고 이월된 대부분의 예산(8억 71백만원)을 다시 불용한 바 있음.
-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사 중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서울(상행선) 전경



안양(하행선) 전경



상행선 터널 내부 전경

하행선 터널 내부 전경

[그림]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외발산 지하차도 보수’ 사업은 지하차도 내 타일 노후로 균열 발생 및 탈락 등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조사되어 지하차도의 타일을 보수하고 오염부를 도장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8억 46백만원 대비 67.3%인 12억 4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품질확보를 위한 보수규격 변경 및 신축이음 재설치에 따라 신규 공종이 발생²⁶⁾하였고 동절기 시공불가로 인해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동절기 한파로 인한 품질확보 방안마련 및 공사중지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추경 편성한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추경 편성은 연내 소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26) 외발산 지하차도 보수 주요공종 수량 변경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증 감
			당초	변경	
기존타일철거 및 내오염도장	야간	m	10,412	10,449	증) 37
신축이음 재설치	야간		0	437	증) 437

-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은 개봉고가차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90억원 대비 31.9%인 28억 74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9억 9천만원 대비 45.1%인 4억 46백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 이는 개봉고가차도가 경인선 철도를 횡단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과의 행위신고 협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시간이 일 3시간으로 제한됨과 동시에,
 - 민원발생에 따른 재설계(승강기 2개소), 지장물 이설(한전케이블 15,000V) 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화물연대 운송파업 및 시멘트 수급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시설비 예산현액 90억원 중 40억원은 '22년 제 1회 추경에서 “승강기 설치 등 민원 해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작업시간 변경 등)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로 증액된 것으로 '22년 7월 발주예정이었던 3차 공사의 사업비 부족분에 해당함.
 -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요구되고 민원 등에 따른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2	1,475,780	4,718	473,024	39,000	200,000	16,832	719,036	23,170	1,475,780	759,816	686,071	20	29,872
2021	1,175,145	10,004	263,853	113,675	600,000	4,565	172,233	10,815	1,175,145	451,382	719,036	9	4,718
2020	1,225,041	1,521	569,807	3,918	150,000	6,351	491,954	1,490	1,225,041	1,042,797	172,233	7	10,004

* 관련 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차입금	기금 목적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차입하는 자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회계 및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가) 개 요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및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²⁷⁾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 당초 재난계정, 재해계정, 구호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재난계정(재해, 재난)과 구호계정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재난계정이 안전총괄실 소관임.

나) 기금 총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²⁸⁾은 전년도말 조성액 7,237억 53백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²⁹⁾ 7,520억 26백만원과 사용액³⁰⁾ 7,598억 36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7,159억 43백만원임([표] 참조).

[표1]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23,753	-7,810	752,026	759,836	715,943

27)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재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8) 당해연도말 조성액 = 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 조성액-사용액)

29)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전입금)+이자수입+기타

30)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다) 기금 수입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1,817억 66백만원), 전입금(3,659억 24백만원)³¹⁾, 이자수입(30억원), 모집공채(2,000억원), 그외수입(1억 5천만원)을 합한 7,508억 4천만원이었으나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15차례³²⁾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치금회수(증 5,372억 7천만원), 전입금(증 1,071억원), 국고보조금(증 39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입계획액을 1조 4,353억 79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표] 참조).

[표] 수입계획액 수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당초	수정	증감	
합계	750,840	1,435,379	684,539	1,477,743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4,169	1,169	16,298
기타이자수입	0	0	0	632
보조금반환수입	0	0	0	25,035
그외수입	150	150	0	0
국고보조금	0	39,000	39,000	39,000

31) ※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2) ◆ 주요 변경사유

- 제1차 변경 :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계획 변경
 - ▶ 예치금회수 181,766백만원 → 581,766백만원(증 400,000백만원)
- 제2차 변경 :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 ▶ 국고보조금 0백만원 → 39,000백만원(증 39,000백만원)
- 제4차 변경 :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증가에 따른 수입계획 변경
 - ▶ 이자수입 3,000백만원 → 4,169백만원(증 1,169백만원)
 - ▶ 예치금 회수 581,766백만원 → 719,035백만원(증 137,269백만원)
- 제8차 변경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추가경정예산)
 - ▶ 전입금 365,924백만원 → 473,024백만원(증 107,100백만원, 추정)

모집공채	200,000	200,000	0	200,000
예치금회수	181,766	719,036	537,270	719,036
기타회계전입금	365,924	473,024	107,100	473,024
전년도이월사업비	0	0	0	4,718

- 수정된 수입계획액 1조 4,353억 79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7억 18백만원을 합한 수입계획현액은 1조 4,400억 97백만원이었으며 1조 4,777억 42백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1조 4,757억 8천만원이 수납되었음([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750,840	1,435,379	4,718	1,440,097	1,477,742	1,475,780

라) 기금지출 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당초 지출계획액 7,508억 4천만원을 1조 4,353억 79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 수정 지출계획액 1조 4,353억 79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7억 18백만원을 합한 지출계획현액은 1조 4,400억 97백만원이었으며, 이중 1조 4,459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298억 72백만원을 이월하였음([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750,840	1,435,379	4,718	1,440,097	1,445,908	29,872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2년도에는 생활치료센터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및 소독지원,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835억 6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재난예방에 916억 84백만원, 응급복구 840억 61백만원, 연구용역 5억 6백만원, 예치금 적립 6,860억 71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음([표] 참조).

[표] 2022년도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재난예방	코로나19 대응	583,565	생활치료센터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등
	일반 재난예방	91,684	보수보강공사, 지하주택 침수방자시설 설치 등
	소계	675,249	-
응급복구		84,061	'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등
연구용역		506	반자하주택 전수조사, '22년 수해백서 제작 등
행정운영경비		21	기금운용심의 자료 제작 및 수당 등
예치금		686,071	-
총 계		1,445,908	-

- 한편, '20년 4월 2일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³³⁾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 '20년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적립했던 누계법정의무예치금을 모두 소진³⁴⁾하였으며 '21년부터 의무예치금을 재적립하기 시작하여 '22.12.31일 기준 법정의무예치금 잔액은 459억 35백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액 419억 29백만원 중 71.2%인 298억 72백만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예방·응급복구사업의 경우 수요발생의 불예측성 및 긴급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발주 및 계약이 일정치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세 이월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42건		41,929	29,872	71.2%	

33)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34) 의무예치금액 사용 특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단지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규모 유지(의무예치금 성격) 지침에 따라 2020년 최저적립액을 보유하고 있었음.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1	응급복구 (한강생태공원 수해복구 공사)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1,110	384	35%	- 특정 제품 선정 및 현장조사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 낙찰자 선정 및 착공 지연
2	연구용역(중대 재해 예방 을 위한 재해 포렌식 및 프로파일링 등 연구용역)	중대재해 예방과	291	116	40%	-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보완절차 이행 -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2023.5.5.)
3	재난예방(양재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역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물재생계획과	1,663	1,367	82%	- 적정 용역수행에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22.10. 방침수립)
4	재난예방(양재2동 배수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	물재생계획과	1,219	984	81%	- 적정 용역수행에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22.10. 방침수립)
5	재난예방(영등포, 신길 빗 물펌프장 유역 배수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물재생계획과	2,667	2,150	81%	- 적정 용역수행에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22.10. 방침수립)
6	재난예방(대치역사거리 일 대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물재생계획과	2,357	1,924	82%	- 적정 용역수행에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22.10. 방침수립)
7	재난예방(대림2빗물펌프 장 증설 및 배수개선 대 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	물재생계획과	1,315	1,089	83%	- 적정 용역수행에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22.10. 방침수립)
8	재난예방 (홍제동 161-1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서대문구 안전치수과	500	438	88%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6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9	재난예방 (홍제동 9-82~282-26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서대문구 안전치수과	500	435	87%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6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10	응급복구 (사각형거 장비투입구 정 비(서초구))	서초구 물관리과	400	268	67%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6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11	재난예방 (가마산로 343 ~ 도신로 1-16 사각형거 보수)	영등포구 치수과	1,530	1,146	75%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5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12	재난예방 (국회대로 612주변 사각 형거 보강)	영등포구 치수과	2,000	372	19%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5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13	응급복구 (사각형거 장비투입구 정비(용산구))	용산구 치수과	300	300	100%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4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14	재난예방(강서로5나길 152~강서로5길 50일대 사각형거 보수)	용산구 치수과	450	450	100%	- '22.10. 예산배정 후 '22.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3개월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15	재난예방(실시간 제설차 량 관제 GNSS 단말기 제 작 및 설치)	도로관리과	450	450	100%	- 32개 제설기관 '민간 제설용역' 계약 ('22.11.15. 전후) 이후 착수에 따른 잘못공기 부족 등으로 용역기간 추가 소요
16	재난예방(노면 결빙파쇄기 물품 구매)	도로관리과	330	330	100%	- 해외(중국) 생산 제품으로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장 가동 중단 및 물류 운송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 사고이월 필요
17	재난예방(중점관리구간 염수분사장치 구매 설치)	도로관리과	4,686	4,570	98%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추진의 어 려움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18	재난예방(2022년 고정식 자동액상살포기 설치사업)	종로구 도로과	150	148	99%	- 설치 예정 2개소(북악산로 및 낙산길) 내 불가피한 사유(점용불가, 장소 협소 등)로 추가 협의 등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
19	재난예방(원격제설시설(염 수분사장치) 구매 설치)	도봉구 도로과	600	425	71%	- 덕릉로 가로등 개량 공사(우이3교 ~ 녹천교)와 병행으로 시행하여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염수배관 파손 및 중복 굴착 예방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사고 이월하여 사업 추진
20	재난예방(22/23년 제설작 업 용역(동부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742	305	41%	- '22/'23년도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제 설용역의 준공기한('23.03.20.)이 미도래
21	재난예방(22/23년 제설작 업 용역(서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919	400	44%	- '22/'23년도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제 설용역의 준공기한('23.03.20.)이 미도래
22	재난예방(22/23년 제설작 업 용역(남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693	250	36%	- '22/'23년도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제 설용역의 준공기한('23.03.20.)이 미도래
23	연구용역(2022 수해백서 제작 연구 용역)	치수안전과	200	178	89%	- '22.11월 용역 발주 - 용역 기간이 '23.8월로 준공기한 미도 래로 사업예산 사고이월
24	재난예방(대심도 빗물배 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강남역/광화문/ 도림천))	치수안전과	4,112	2,195	53%	- '22년 9월 사업계획 수립 후 재배정된 사업으로 9.28일 용역 발주 - '22.11.21. 용역 착수하여 준공기한 ('23.5.19.) 미도래로 사고이월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25	재난예방(양수기 관리방안 계획에 따른 중형(15HP)양수기 및 부속자재 구매)	치수안전과	195	167	86%	- '22.12. 계약자 선정 완료 후 양수기 관련 부속 자재 제작 및 납품에 기간이 소요하여 사고이월
26	재난예방(신천빗물펌프장 고압모터펌프 교체)	송파구 치수과	297	294	99%	- 신천빗물펌프장 고압모터펌프 교체를 6월에 추진하였으나, 원자재 상승 및 기록적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포항제철소 침수) 등으로 자재 수급이 지연
27	응급복구(고덕빗물펌프장 고압모터펌프 정비)	강동구 치수과	688	418	61%	- 고압모터펌프 정비는 동절기에 시운전(부하가동)이 불가하여 장상가동 확인 불가하므로, 2023년 우기에 시운전(부하가동) 후 준공 필요
28	응급복구(방화빗물펌프장 로타리식 자동제진기 제작 구매설치)	강서구 물관리과	1,300	531	41%	- 로타리식 제진기 제작 잦아 기간 부족 및 설치 전 바닥 정비 공사 선행이 필요하나 동절기로 콘크리트 타설 등 관련 공사 시행이 어려움
29	재난예방(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강서구 물관리과	400	400	100%	- 10월 기금배정 후 11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나 1차례 유찰되어 계약 지연 - 강서구 방화동 46-2번지 일대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절대 공기(12개월) 필요
30	응급복구(양재천 수해복구 공사)	강남구 공원녹지과	1,500	738	49%	-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10.06.~11.01.), 입찰 및 적격심사 이행(11.4.~11.20.) 완료 후 22.11.21. 착공하여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31	응급복구(은평구 관내 하천 침수피해 복구사업)	은평구 치수과	750	200	27%	-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천시설물 긴급 정비 및 창릉천 준설 사업으로 - 강우가 지속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량이 적은 겨울에 준설 예정
32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관악구 그린빌라 뒤편 응급복구사업)	관악구 공원녹지과	743	668	90%	- '22.11. 착공 후 화물연대파업으로 자재(레미콘) 수급 지연 낮은 기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 지연
33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관악구 우월그린빌리지 뒤편 응급복구 사업)	관악구 공원녹지과	877	666	76%	- '22.11. 착공 후 동공(길이 470cm, 폭 및 높이 각각 1m) 발생하여 추가 지반 조사 시행 후 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고이월 필요
34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관악구 신관중 학교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관악구 공원녹지과	184	117	64%	- '22.11. 착공 후 화물연대파업으로 자재(레미콘) 수급 지연 낮은 기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 지연
35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관악구 영락고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관악구 공원녹지과	365	295	81%	- '22.11. 착공 후 화물연대파업으로 자재(레미콘) 수급 지연 낮은 기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6	응급복구[산사태 예방 응급복구사업(범일운수 뒤)]	금천구 공원녹지과	50	46	92%	- 재난관리기금 교부 결정이 연도말(11.2.)에 이루어져 사업 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고이월
37	응급복구[산사태 예방 응급복구사업(치유의숲, 잣나무산림육장)]	금천구 공원녹지과	94	92	98%	- 재난관리기금 교부 결정이 연도말(11.2.)에 이루어져 사업 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고이월
38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상도근린공원 사방시설 복구공사)	동작구 공원녹지과	391	391	100%	- 재난관리기금 교부 결정이 연도말(11.2.)에 이루어져 사업 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고이월
39	응급복구(서울대공원 산사태 응급 복구사업)	서울대공원 조경과	4,053	3,432	85%	- 재난관리기금 배정(10월) 후 신속하게 설계용역 완료 및 11월 공사입찰 진행, 적격심사 및 공사계약 완료 후 12월 2일부터 착공(절대공기 부족)
40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복구 실시설계용역)	성동구 공원녹지과	91	91	100%	-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및 기술 용역계약심사를 거쳐 12월 계약 및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41	응급복구(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 은평구 산사태 예방 응급 및 복구사업)	은평구 공원녹지과	715	600	84%	-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및 기술 용역계약심사를 거쳐 12월 계약 및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42	재난예방(서북병원 보도블럭 교체공사)	서북병원 원무과	52	52	100%	-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및 기술 용역계약심사를 거쳐 12월 계약 - 지속되는 한파로 시공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 사고이월

- 다만,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바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차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2	59,703	1,081	-	620	16,893	-	41,109	59,703	32,110	26,211	-	1,382
2021	53,193	-	-	423	19,738	-	33,032	53,193	35,219	16,893	-	1,081
2020	51,191	-	-	339	18,072	-	32,780	51,191	31,453	19,140	-	598

가) 개 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6억 2천만원, 예치금회수 168억 93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11억 9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81백만원을 합한 597억 3백만원이며, 이 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53.8%인 321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2억

11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79억 74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17억 29백만원과 사용액 321억 1천만원의 차(96억 19백만원)를 합한 275억 9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96억 19백만원을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17,974	9,619	41,729	32,110	27,593 (사고이월 1,382 포함)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누계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 현실화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함에 비해 굴착복구비 및 전산개발비 등 지출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수 입 액		23,235	22,143	32,058	40,486	33,119	33,455	41,729
	원인자부담금	22,828	21,696	31,672	39,945	32,780	33,032	41,109
	이자수입 등	407	447	386	541	339	423	620
지 출 액		24,029	25,164	31,018	36,905	31,453	35,219	32,110
굴 착 복	소 계	23,777	24,962	30,873	36,673	30,580	33,396	31,195
	직접복구비	17,450	18,260	25,130	32,333	27,332	29,197	26,204

구 공 사	사후정비비	5,568	5,218	4,382	2,834	1,731	2,761	3,500
	감리비및부대비	759	1,484	1,357	1,506	1,517	1,438	1,491
	기타(전산운용 등)	252	202	145	232	873	1,823	915
사고이월		-	-	-	-	598	1,080	1,382
증 감		감 794	감 3,021	증 1,040	증 3,581	증 1,068	감 2,844	증 9,619
연도말 잔액(예치금)		16,471	13,451	14,491	18,072	19,140	16,893	26,211

다) 기금지출 결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51억 21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30억 11백만원이 감소된 321억 1천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96.7%에 해당하는 321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1백만원을 이월시킴([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5,121	32,110	1,081	33,191	32,110	1,382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위한 지출 311억 95백만원이 발생했으며,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에 9억 9백만원, 기본경비 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지출액
비용자성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32,110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연구용역비	31,195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909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6

- 금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이월은 5건 13억 82백 만원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는데,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표] 참조).

[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5건		1,382	1,382 (100%)	
1	도로굴착복구 품질강화 기반 조성 용역(3차)	도로관리과	408	408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이 '22.10.31. 준공되고 3차년도 사업을 '22.11.24. 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23.8.)로 사고이월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및 감리 용역(3차)	도로관리과	216	216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이 '22.11.30. 준공되고 3차년도 사업을 '22.12월 계약체결 및 진행 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3.5.)로 사고이월
3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1권역)	도로관리과	73	73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5.18. 계약 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3.6.)로 사고이월
4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2권역)	도로관리과	431	431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5.16. 계약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23.6.)로 사고이월
5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3권역)	도로관리과	254	254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5.11. 계약 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23.7.)로 사고이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정권고사항	소관실국
37	적극적 징수활동을 포함한 합리적인 세입추계의 수립 (지난년도 수입)	안 전 총 괄 실
38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안 전 총 괄 실
39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수 성과지표 관련 평가 오류	안 전 총 괄 실
44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사업 사전 검토 이행 미비에 따른 불용 예산 발생	안 전 총 괄 실

37. 적극적 징수활동을 포함한 합리적인 세입추계의 수립(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세입추계 / 안전총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세입 결산 지난년도 수입 항목 관련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소관부서의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현황

부서	세입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25-01 지난년도수입	0	1,004	0	38	96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25-01 지난년도수입	2,831	11,444	1,553	596	9,295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25-01 지난년도수입	878	3,733	732	71	2,929

지난년도 수입은 과거년도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한 수입으로, 과거년도 수입을 분석할 경우 일정정도 예측이 가능한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소관부서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과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임.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없는 경우) 편성기준은 소관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부과액+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부과 증가율] ×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징수율 형태의 산식을 사용함.

미수납액(체납액)은 향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상당액이 납세자의 태만 또는 채권 소멸 시효완성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음.

평균 징수율의 반대 의미는 평균 체납율을 의미하므로, 세입예산 편성 기준을 통한 세입추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납율 또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나. 시정권고

예산현액대비 징수 결정액이 과도하게 높게 발생하는 소관부서의 경우에는 적극적 활동을 통한 평균(또는 목표) 징수율 고려하여 세입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강화,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유무를 조회하는 등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함.

체납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중 하나인 압류절차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채권결손상황이 발행할 수 있으니, 매년 말 결손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기를 권고함.

38.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 안전총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중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추경 예산	예산액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기 이월액	집행 잔액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시설비	(7,000)	1,500	8,056	9,556	4,923	1,500	3,133
		감리비		1,358		1,358	765	593	
	백년다리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시설비			6,248	6,248	208		6,040
		감리비			438	438	4	1	434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시설비			1,336	1,336	336	270	730
	고가차도 철거	시설비		900	10,675	11,575	1,307	195	10,073
	고가차도 철거	감리비			469	469	401		69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시설비		4,480	519	4,999	1,752	1,000	2,247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21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가교를 배제한 변경설계가 진행중으로 정상적인 공정 추진이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사업과 고가차도 철거 사업(계획 보류가 되어 집행잔액 불용)은 전년 사고이월액보다 당년도 집행액이 적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은 감액 추경과 조정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어려운 상태가 됨.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사업(22년 6월 공사 준공)은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용이 어렵게 됨.

당초 사업계획과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거년도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하여서, 당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나. 시정권고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부서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사업 계획을 준비할 때, 치밀한 사전 조사와 환경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 이후에 동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39.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수 성과지표 관련 평가 오류

[성과보고서 / 안전총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성과지표 중 하나인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22년 목표치가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50%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목표치 32개 시설수로 동일하고,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당초 목표 32개소 대비 50% 증가한 48개소를 선정하였다고 함(성과보고서 기준). 그러나, e호조시스템상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는 40개 시설수로서, 검토결과 40개 시설수가 올바른 것으로 성과보고서상 오류가 발견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수

(단위 : 백만원)

측정산식(방법)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성과보고서 기준, 오류)	'22년 달성성과 (올바른 것)
노후 옹벽 담장 정비완료수	예산	20억원	30억원	30억원
	목표	32	32(오류)	40(e호조시스템)
	실적	37	48	48
	달성률(%)	115%	150%	120%
	선정사업 개소	15개 자치구 37개 사업	19개 자치구 48개 사업	19개 자치구 48개 사업

예산 투입이 50% 증가하면 증가한 예산을 고려한 목표치 48개소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40개로 산정한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임('21년도에도 20억원 예산으로 37개소 달성실적, '22년도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함).

만약 '22년도 목표치 48개소가 될 경우 달성률은 100%로서 '21년도 실제 달성률 115% 고려했을 때 '22년도 48개소 목표치도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도전성이 낮은 목표치로 사료됨.

나. 시정권고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정확한지에 대하여 e-호조시스템상 성과계획서의 목표치와 대사하는 절차, 소관부서에 의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검토 절차 및 차상급자(또는 평가자)에 의한 검토 등 효과적인 검토 절차를 통하여 올바른 성과평가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하기를 권고함.

44.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사업 사전 검토 이행 미비에 따른 불용 예산 발생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 안전총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22년 5월 추경으로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사업 예산 5억원이 반영되었음.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사업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	불용액	비고
500,000	0	0	500,000	

한남동 한남대로27길 주택가 도로변에 방음벽 신설하여 공동주택으로의 소음 감소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전에 타당성검토 용역 등 사전절차가 없었음.

또한, '22년 2월 한남1고가 정밀안전진단용역 검토 결과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소음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실효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예산잔액(5억원)이 불용되었음.

나. 시정권고

향후 사업 예산 편성 시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함.